



## 시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자 : 군 산 시 장

발행처 : 공보담당관 (☎450-4221)

### 【훈 령】

- 군산시 훈령 제238호      군산시상근인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
- 군산시 훈령 제239호      군산시장애인행정도우미근무규정 폐지규정      ..... 7

###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0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군산bc)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8
- 군산시 고시 제2009-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9
- 군산시 고시 제2009-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대명동 385-19,60) 실시계획인가 고시      ..... 11
- 군산시 고시 제2009-5호      어업권 보유 한계면적의 범위 개정 고시      ..... 15
- 군산시 고시 제2009-8호      시계획시설(소로3-473)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16
- 군산시 고시 제2009-9호      지적측량 기준점 고시      ..... 18

###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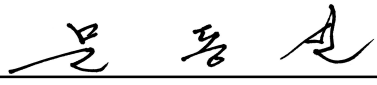
- 군산시 공고 제2009-233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고      ..... 19

###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09-177호      군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 군산시 공고 제2009-222호      군산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 24
- 군산시 공고 제2009-224호      군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29
- 군산시 공고 제2009-225호      군산시립도서관운영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40
- 군산시 공고 제2009-226호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0
- 군산시 공고 제2009-240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3
- 군산시 공고 제2009-241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1

회  
람

군산시 상근인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월 30일

군산시 훈령 제 238호

## 군산시 상근인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상근인력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총263명”을 “총261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 상근인력의 정수표(제7조 관련)

### 1. 고용상근인력의 정수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환 경 미화원	도 로 보수원
		소계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인부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단속 감시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계	205	125	28	23	18	56	40	40
본청 소계	131	65	5	8	13	39	40	26
공보담당관	2	2	1			1		
감사담당관	1	1				1		
총 무 과	5	5				5		
기획예산과	1	1				1		
회 계 과	1	1				1		
세 무 과	3	3				3		
징 수 과	1	1				1		
민원봉사과	6	6		1	1	4		
지역경제과	2	2				2		
투자지원과	2	2	1			1		
해양수산과	1	1				1		
산림녹지과	1	1				1		
농수산물유통과	1	1				1		
주민생활지원과	3	3	1		1	1		
복지지원과	1	1		1				
여성복지과	3	3	1	1	1			
문화체육과	2	2				2		
관광진흥과	3	3	1	1		1		
환경위생과	2	2				2		
청 소 과	44	4		4			40	
건 설 과	28	2			1	1		26
건 축 과	1	1				1		
교통행정과	11	11			9	2		
토지정보과	6	6				6		
직속기관 소계	22	22	13	6	0	3	0	0
보 건 소	16	16	13			3		
농업기술센터	6	6		6				
사업소 소계	44	30	10	9	4	7	0	14
수 도 과	11	7		4	2	1		4
하 수 과	11	1	1					10
체육시설관리과	10	10	3	4	2	1		
청소년회관관리과	8	8	3	1		4		
문화회관관리과	2	2	1			1		
철새생태관리과	2	2	2					
의회사무국 소계	8	8			1	7		
의회사무국	8	8			1	7		

## 2.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수

부 서 별	합 계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기 타 비경비분야
			소계	녹지훼손 단속	기타 감시	
계	56	56				
<b>본청소계</b>	26	26				
총 무 과	13	13				
지역경제과	6	6				
복지지원과	2	2				
청 소 과	3	3				
교통행정과	2	2				
<b>사업소계</b>	30	30				
농업기술센터	2	2				
수 도 과	11	11				
체육시설관리과	4	4				
청소년회관관리과	5	5				
문화회관관리과	4	4				
철새생태관리과	4	4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정수의 총수) ①시의 상근인력의 정수는 총263명으로 한다.</p> <p>② (생 략)</p>	<p>제7조(정수의 총수) ①-----</p> <p>총261명-----</p> <p>② (현행과 같음)</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상근인력의 정수표(제7조 관련)									상근인력의 정수표(제7조 관련)										
1.고용상근인력의 정수									1.고용상근인력의 정수										
부서별	계	단순노무원					환 경 미 화 원	도 로 보 수 원		부서별	계	단순노무원					환 경 미 화 원	도 로 보 수 원	
		소 계	시설물 장비 유지 관리 인부	현 장 공사, 작업등 현업 인부	현 장 지도 단속 감시 현자 인부	단 순 잡 역 조 무 인 부						소 계	시설물 장비 유지 관리 인부	현 장 공사, 작업등 현업 인부	현 장 지도 단속 감시 현자 인부	단 순 잡 역 조 무 인 부			
계	207	126	28	23	17	57	41	40	계	205	125	28	23	17	56	40	40		
본청 소계	133	66	5	8	13	40	41	26	본청 소계	132	66	5	8	13	39	40	26		
여성 복지과	4	4	1	1	1	1			여성 복지과	3	3	1	1	1	삭 제				
청소과	45	4		4			41		청소과	44	4		4			40			
사업소 소계	44	30	10	9	4	7	0	14	사업소 소계	44	30	10	9	4	7	0	14		
수도 행정과	5	5		2	1	2							삭 제						
수도과	7	3		2	1			4	수도과	11	7		4	2	1		4		
청소년 화관 관리과	7	7	3	1		3			청소년 화관 관리과	8	8	3	1		4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수						2.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수							
부 서 별	합 계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기 타 비경비 분야	부 서 별	합 계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기 타 비경비 분야
			소계	녹지훼손 단속	기타감시					소계	녹지훼손 단속	기타감시	
계	56	56				계	56	56					
본청소계	26	26				본청소계	26	26					
총 무 과	<b>11</b>	<b>11</b>				총 무 과	<b>13</b>	<b>13</b>					
지역경제과	6	6				지역경제과	6	6					
복지지원과	2	2				복지지원과	2	2					
청 소 과	3	3				청 소 과	3	3					
교통행정과	<u>4</u>	<u>4</u>				교통행정과	<u>2</u>	<u>2</u>					

군산시 장애인행정도우미 근무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본 품 순

2009년 1월 30일

군산시 훈령 제 239호

# 군산시 장애인행정도우미 근무규정 폐지규정

군산시 장애인행정도우미 근무규정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09-2호

# 고 시

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

##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서면 옥봉리·선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 2) 명 칭 : 군산 C.C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면 적 : 4,240,782㎡
  - 2) 규 모 : 81홀(회원제 18홀, 대중제 63홀)
4.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741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레저산업(주) 대표 강배권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1년 연장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당초	대중제 27홀 (‘04.06.~’06.02.)	대중제 9홀 (‘04.06.~’06.08.)	회원제 18홀 (‘04.06.~’07.01.)	대중제 18홀 (‘06.05.~’08.01.)	대중제 9홀 (‘06.05.~’08.12.)
변경	대중제 27홀 (‘04.06.~’06.02.)	대중제 9홀 (‘04.06.~’06.08.)	회원제 18홀 (‘04.06.~’07.01.)	대중제 18홀 (‘06.05.~’08.01.)	대중제 9홀 (‘06.05.~’09.12.)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실음 생략(변경 없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군산시 고시 제2009-3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1. .

## 군 산 시 장

### 사 업 승 인 내 역

1. 사 업 명 : 대명동 현대파인빌아파트 신축공사(분양)
2. 사업주체 : 전북 군산시 조촌동 859-16 (유)현대주택건설  
대표 조성석
3. 사업위치 :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
4. 사업내용
  - 가. 대지면적 : 17,648.70m<sup>2</sup>
  - 나. 건축면적 : 12,277.605m<sup>2</sup>
  - 다. 연 면 적 : 95,721.5026m<sup>2</sup>
  - 라. 건축규모 : 아파트 4동, 31 ~ 33층, 614세대
    - 107.68m<sup>2</sup>형(전용면적 : 76.2648m<sup>2</sup>) 120세대
    - 107.84m<sup>2</sup>형(전용면적 : 76.2648m<sup>2</sup>) 128세대
    - 119.51m<sup>2</sup>형(전용면적 : 84.9352m<sup>2</sup>) 58세대

- 119.69m<sup>2</sup>형(전용면적 : 84.9352m<sup>2</sup>) 60세대
- 119.28m<sup>2</sup>형(전용면적 : 84.9348m<sup>2</sup>) 120세대
- 119.46m<sup>2</sup>형(전용면적 : 84.9348m<sup>2</sup>) 128세대

마.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 사업비 : 69,276,700천원

사. 사업기간 : 2009. 02 ~ 2012. 5

5.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시설

- 관리사무소 : 182.88m<sup>2</sup>
- 보육시설 : 182.88m<sup>2</sup>
- 주차장,계단,승강기,복도등 : 21,961.3141m<sup>2</sup>
- 전기실,발전기실 : 355.4832m<sup>2</sup>
- 재활용품보관창고 : 115,3632m<sup>2</sup>
- 통신실,경비실,화장실 : 209.9506m<sup>2</sup>
- 근린생활시설 : 1,843.7943m<sup>2</sup>

6.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결정도서 : (붙임)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 건축과 063-450-4471 )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09-4호

# 고 시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6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함에 따라,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6, 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

##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대명동 385-19, 385-6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현대주택건설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설명			시설결정		금회시행		
				연장(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도로	중로	2	72	184	15.5	5.5	130.3	701
합 계								701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1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유)현대주택건설 대표 조성석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2. ~ 2012. 5.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구분	지번	지목	지적 (m <sup>2</sup> )	편입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385-19	대	13,635.6	384.3	(주)오페라 하우스퀵번션센터	군산시 대명동 385-19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	
							(주)이랜드리테일	대전 서구 탄방동 590	근저당	
2	385-60	장	18,064.2	316.7	(주)미송종합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근저당	
계				701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무상귀속 :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전체

나. 무상양도 : 해당 없음

□ 용도지역·지구·구역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

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1	대명동 현대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일원	-	18,779.1	18,779.1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경 사유
신설	21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 일원	18,779.1	상업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체계적·계획적인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군산시의 균형성장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고자 본 사업구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76	10	국지 도로	177	대로 2-3	대로 3-5	일반 도로		건고91 (‘68.7.22)	
변경	중로	2	72	15.5	국지 도로	184 (184)	대로 2-3	대로 3-5	일반 도로			폭원확장 노선연장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변경	소로 1-76	중로 2-72	· 폭원확장 및 노선연장 - 폭원 : 10m → 15.5m - 노선 : 177m → 184m(증 7m)	·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지구 단위계획에 따른 도로폭원확 장에 의한 도로등급(소로→ 중로)변경 및 노선연장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I	18,779.1	①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	17,648.7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②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외 4필	1,031.6	도시계획도로용지 (중로2-72호선)
		③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	98.8	일반도로용지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획지번호	위치	구 분	지구단위계획결정	법규정(군산시조례등) <참 고>
①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허용용도(령) - 공동주택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 80%이하(조례)
		용적률	· 460.0%이하	· 1,000%이하(조례)
		높 이	· 최고높이 : 33층 이하	

□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 용 기 준
차 량 동 선	진 출 입 동 선	· 대상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무분별한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차량 출입허용구간 1개소 및 비상출입구 1개소 지정
	교통안전 시 설	· 단지내 도로곡선 구간 및 교차구간 반사경 설치로 시거확보(8개소) · 과속위험구간 과속방지턱 설치(3개소) · 사업지 남측, 남서측 가로보행자 보호용 가드웬스 설치(L=159m) · 비상출입구 접근부에 탈착식 블라드 설치(2개소)
보 행 동 선		· 사업지 남측가로(대명1길)전면 확폭구간 사업지측 보도확보(B=1.5m) · 단지내 보행동선 단절구간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4개소)

군산시 고시 제2009-5호

## 어업권 보유 한계면적의 범위 개정 고시

수산업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별조합 및 어촌계 『어업권 보유 한계면적의 범위』를 군산시 수산조정위원회 의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 .

군 산 시 장

□ 어업권 보유 한계면적의 범위

단 체 별	어장보유면적 한계설정	
	계 원 수	한계면적
지구별조합		무한해제
어 촌 계	400인이상	2,100ha이하
	350인이상 ~ 400인미만	1,900ha이하
	300인이상 ~ 350인미만	1,700ha이하
	250인이상 ~ 300인미만	1,500ha이하
	200인이상 ~ 250인미만	1,300ha이하
	150인이상 ~ 200인미만	1,100ha이하
	100인이상 ~ 150인미만	900ha이하
	50인이상 ~ 100인미만	700ha이하
50인미만	500ha이하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어업권 보유 한계면적 범위(군산시고시 제2007-475)는 이를 폐지한다.

군산시 고시 제2009-8호

# 고 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01. .

##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송창동 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사업명	시설명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송창17통 도로개설	소로 3-473	6	223	6	65	281	
소 계						281	

3.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9. 01. ~ 2011.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순 번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1	2-3	대	26	26	박판순	군산시 송창동 2			
2	2-4	대	14	14	우리기업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27-28			
3	3-201	대	18	18	김형채	군산시 송창동 3-14			
4	3-202	대	1	1	여상순	광주 서구 양동 320-29			
5	3-203	전	4	4	김성화외3인	군산시 송창동 3-52			
6	22-8	대	20	20		군산시			
7	22-9	대	46	46		군산시			
8	22-10	대	13	13		군산시			
9	22-22	도	221	61		군산시			
10	22-24	대	6	6		군산시			
11	22-25	대	23	23		군산시			
12	22-26	대	62	62		군산시			
13	22-27	대	52	52		군산시			
	합계	13필	506	346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 2009-9호

나포면 주곡리 민원업무에 따른 지적 도근점(4점) 설치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를 지적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일

##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증횡선수치		토지소재	설치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 칭	번 호	X(m)	Y(m)			
지적도근점	51005	280524.65	184181.75	나포.주곡 140-2	2009.1.9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51006	280214.34	184043.76	나포.주곡 114-13	"	"
"	51007	280266.04	184002.37	나포.주곡 119	"	"
"	51008	280300.22	183792.03	나포.주곡 157-13	"	"

군산시 공고 제2009-233호

## 공 고

1. 군산시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우리시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 29.

## 군 산 시 장

### 가. 정비구역지정(안)

#### ① 정비구역지정 내역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m)	비 고
신 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운주공 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	37,173.6	

- ② 지정사유 : 나운주공2단지아파트는 준공 후 27년 이상 경과된 공동 주택단지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등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어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정비계획(안) 주요내용

- ① 토지이용 계획
-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관한 사항
- ④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다.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 군산시청 건축과(2층)

마. 관련도면 : 실음생략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063-450-4471)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09-177호

## 공 고

군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11.5자로 일부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나. 민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합 운영함에 있어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확대운영(보건복지서비스분야→8대서비스분야)하며 이에 따른 협의체 위원수 조정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대신함

## 2. 주요내용

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수 상향 조정( 제3조제1항, 동법제4항 일부개정)

- 1) 대표협의체 위원수를 10인이상 ~ 30인이하로 상향조정
- 2)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인이상 ~ 30인이하로 상향조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063-450-4316, 팩스063-450-6497)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김연실(전화063-450-4316,43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사항

제3조제1항 중 “20” 을 “30 ”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20” 을 “30”으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① (생 략) 1.~6.( 생 략) &lt;신 설&gt;</p> <p>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 략) ③ (생 략)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2조(기능) ①(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p> <p>제3조(구성) ①----- ----- 30-----.</p> <p>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30-- -----.</p>

**군산시 공고 제 2009-222호****공 고**

『군산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군산시 사회서비스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

**2. 주요내용****가. 군산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 예비 사회적기업지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나.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
-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시장이 지정

**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전화063-450-6232 팩스063-450-639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취업노사담당 (전화 063-450-6232, 담당자:이숙미, E-mail:trustme@gunsan.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인 설립 및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비 등 지원)** ①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지역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09-224호

## 공 고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조례안 제4조)
- 나. 도서관 자료는 관외대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료로 대출하며 1일 3권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단, 희귀 자료 등은 관외대출을 제한 할 수 있음(조례안 제6조)

다.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음(조례안 제12조, 14조)

(1)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학교 및 교육청 공식행사 : 전액감면

(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감면

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군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둠(조례안 제19조)

마.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조례안 제32조)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송풍동 954-3

군산시 청소년회관 관리과(전화063-450-4456, 팩스063-466-0367)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소년회관 관리과 담당자 최지선 (전화063-450-44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법”이라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내의 대회의실, 교양문화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료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
5.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한 정보 및 자료를 복사, 인쇄하는 자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료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 공간 제공,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인 문화기반 시설을 말한다.

### 제2장 도서관 운영

제3조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립도서관 : 군산시 수송동 798-1번지
2. 임피채만식도서관 :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14번지

제4조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 6.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입관의 제한)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3. 기타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관외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를 관·외대출 할수 있다.

-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
-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희귀자료·고서·귀중자료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망실·훼손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 자료로 대체하게 하고 현품 대체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년도 수입장서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자료의 기증) 관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수수료)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 및 자료의 복사, 인쇄 등을 하는 자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의 사용료와 수수료는 별표1,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학교 및 교육청 공식행사 : 전액감면
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제한·취소 및 정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기타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사용자 변상 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중에 부대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군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시에 거주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관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문화·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이용자 중 도서관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등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22조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시립도서관 부대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제25조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암작은도서관 : 군산시 구암동 397-8번지
2. 미성작은도서관 : 군산시 산북동 3801-1번지
3. 월명작은도서관 : 군산시 월명동 18-15번지
4. 미룡작은도서관 : 군산시 미룡동 900-1번지
5. 흥남작은도서관 : 군산시 장재동 212번지

제26조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열람 · 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진흥 및 독서교육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7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관할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잔임기간이 임기의 1/4이하이면 선출하지 않는다.

제28조 (자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9조 (자문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자료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자문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32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군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운영 준용) 제5조에서 제11조의 규정은 도서관운영에 준용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가입된 회원, 자료의 대출 및 부대 시설의 사용허가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 용 료 (제13조 관련)**

1. 도서관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명	기준	사 용 료(원)	비 고
대회의실	1회	30,000	1. 사용시간별 구분 1일 09:00 ~ 21:00 1회 기준 4시간 이내  2. 사용시간이 1회 기준 미달한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3. 1시간 미만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2시간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를 전액 가산한다.(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 초과 사용 불가)
교양문화실	1회	20,000	

2. 기타설비 사용료

설 비 명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음 향	음향설비	1회	10,000	· 유선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시 1대당 2,000원 가산
	무선마이크	1대	5,000	
조 명	대회의실	1회	25,000	·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	대회의실	1회	10,000	
	교양문화실			
냉 · 난방	대회의실	1회	20,000	· 1회는 4시간 이내로 한다
	교양문화실		10,000	

[별표 2]

**수 수 료** (제13조 관련)

구 분	규 격	기 준	금 액(원)
자료 복사료	A4	1매	40
	B4	1매	50
프린터 사용료	A4	1매	40
문화강좌	1월	1월 4주	10,000원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보상금 기준에 따름		

※ 문화강좌 재료비와 교재비 본인 부담

군산시 공고 제2009-225호

## 공 고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선거일(임시공휴일)로 한다. 다만, 자료실은 월요일과 국경일에 휴관한다.(시행규칙안 제3조)

나. 도서관 자료는 관외대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료로 대출하며 1일 3권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단, 희귀 자료 등은 관외대출을 제한 할 수 있음(시행규칙안 제7조)

다.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음(시행규칙안제16조)

- (1)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 (2) 학교 및 교육청 공식행사 : 전액감면
- (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감면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송풍동 954-3

군산시 청소년회관 관리과(전화063-450-4456, 팩스063-466-0367)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소년회관 관리과 담당자 최지선 (전화063-450-44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퇴관 및 열람시간) 군산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및 작은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휴 관) ① 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 :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선거일(임시공휴일)로 한다. 다만, 자료실은 월요일과 국경일에 휴관한다.
2. 임피채만식도서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휴관한다.
3. 작은도서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휴관한다.

② 도서의 정리·점검 및 부대시설물의 대청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거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3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 할 때에는 예외로한다.

제4조 (도서관 이용제한) ① 도서관장이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시설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다녀야 한다.
2. 지정된 장소외에서 흡연, 음주, 잡담, 음식섭취,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3. 자료, 비품, 기타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4. 열람실내에서 수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대출받은 도서는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도서관 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타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관장은 열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④ 도서관 이용자는 열람한 자료를 도서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히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시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로 하되, 관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비서류 중 사진은 6개월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성인-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1매
2. 중·고등학생(신분증미발급자) - 학생증(재학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1매
3. 유아·아동 - 보호자동반, 의료보험증, 학생사진1매
4. 군산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 재직(학) 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학생증, 사진1매

제6조 (회원증발급 및 사용·책임)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인 1매를 발급한다.

-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관외대출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발급 회원증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급된다.
- ④ 회원은 주소지 및 직장의 이동, 졸업 등으로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 ⑤ 회원으로서 타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 즉시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⑥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문제 발생의 경우에는 회원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관외대출) ① 자료의 관외대출은 무료로 하고 관외대출하는 자료는 1인 3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외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반납한다. 다만, 군부대 등 특수한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1회 5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의 관외 대출 권수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1.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단체
2. 도서관 행사 참여자 중 성적우수자
3. 독서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외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DVD 등 기타 비도서자료
6.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관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료 요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관외대출자료의 반환 및 변상) ① 관외대출자료는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관외대출 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일 수 만큼 관외대출이 정지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 자료로 대체하여야 하며 현품대체가 불가능한 자료는 시가로 현금변상 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자료를 대체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체자료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징수한 변상금은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 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제10조 (자료회수 불능처리) 자료를 관외대출한 회원과 가족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자료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8조 제1항에 준하여 제적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장은 자료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 한다.
- ③ 기증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④ 관장은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입수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⑤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문화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회원가입정보이용) ① 도서관에 제출된 회원정보는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도서 미반납자에 한하여 반납요청서 통보시 개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장서 점검)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이상 전체 장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종류별로 수시 장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학교 및 교육청 공식행사
3. 비영리 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4. 지역문화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5.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등
6. 기타 동일조건외의 경우 우선 신청자

제15조(사용신청 등) 도서관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5일전까지, 허가신청을 변경(1회에 한함)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각종행사·공연 등의 홍보물을 게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16조(사용료·수강료 납부) 도서관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개시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수강 신청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사용개시 1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개시 7일 전까지 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제18조(사용료·수수료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유가 부대시설사용자 및 수강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대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부대시설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3.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개시일 이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 : 수수료 전액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 한 경우 : 사용료(수수료) 전액

② 제1항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허가 취소된 부대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반환 받지 아니하고 부대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취소된 허가기간 상당을 부대시설의 사용일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1호,2호,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부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에 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3호,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수강료반환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에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료복사카드를 이용하다가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수수료 잔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대장 비치) 도서관내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
2. 부대시설 사용현황(별지 제10호서식)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부대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21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가입된 회원, 자료의 대출 및 부대 시설의 사용허가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이 용 시 간**(제2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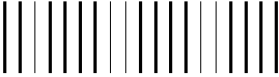
구 분		이 용 시 간			
		월요일	화요일 ~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시 립 도서관	아동·유아자료실 일반자료실	휴 관	09:00 ~ 18:00	09:00 ~ 17:00	
	디지털자료실	휴 관	09:00 ~ 12:00 13:00 ~ 18:00	09:00 ~ 12:00 13:00 ~ 17:00	
	열람실	07:00 ~ 22:00			
	대회의실 교양문화실	09:00 ~ 21:00			
임피채만식도서관		09:00 ~ 18:00			휴관
작은도서관		09:00 ~ 18:00			휴관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회원증

(전 면)

도 서 관 회 원 증

사 진	성 명 : 0 0 0 회원번호 : 00000000000000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	---

군 산 시 립 도 서 관

(후 면)

**★ 유의사항 ★**

1. 도서대출시 이 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2.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3. 대출기간 및 책수 : 1회 3책 14일
4.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도서관에 알려주세요
5. 반납기일 연체 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중지 됩니다.

※ 대출한 자료의 분실 및 파손시 동일자료로 변상  
 자료운영담당 ☎450-6575, 구암작은도서관 ☎445-1800  
 월명작은도서관☎443-2642, 미성작은도서관☎461-6178  
 미룡작은도서관☎468-2241, 흥남작은도서관☎445-2241  
 홈페이지 : <http://lib.gunsan.go.kr>

군 산 시 립 도 서 관





[별지 제4호서식]

기 증 증 서

제 호

기 증 증 서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우리 도서관에 기증한 등  
점의 자료는 시민의 문화예술발전과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군산시립도서관장(직인)



[별지 제6호서식]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단체명		연락처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대회의실 <input type="checkbox"/> 교양문화실			
행사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 일간)	행사참가인원	명
사용내역				
사용료	일금	원정(₩ 원)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행사명			
	사용기간(참가인원)			
	사용내역			
변경사유				
<p>군산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신 청 인                      년    월    일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p> <p>첨부 : 사용계획서 1부. 군산시립도서관장 귀하</p>				

부대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군산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물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인	사용기간	사용시설	사용료	허가조건
	: : .부터 : : .까지		원	

년    월    일

군산시립도서관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부 대 시설명	신 청 자		사 용 간	행 사 명	행 사 참 가 인 원	사 용 료		부 과 사용료	비 고 (허가 여부등)	결 재		
	변경 신청 일자		단체명	대표자명	변경 사용 기간	변 행 사 명	경 행 사 명	변경 참가 인원	감액			반환	담당자	담 당

[별지 제10호서식]

부대시설 사용현황

일 자	주 체	행 사 명	사 용 부 대 명	참 석 인 원	사 용 료	유 형 별						비 고	
						연 극	영 화	음 악 회	공 공 행 사	종 교 집 회	기 타		





군산시 공고 제2009-226호

# 공 고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군산시 청소년회관에서 도서관업무가 직제개편에 따라 별도 업무로 조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적용하여 청소년회관 운영조례를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로 전부개정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수련원을 수련관으로 명칭변경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 2005. 3. 24

나. 도서관 운영 삭제 ( 제2장 전부 )

⇒ 군산시립도서관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입안예정

다. 시설임차 상위법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2005.12.30)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송풍동 954-3

군산시 청소년회관 관리과(전화063-450-6576, 팩스063-466-0367)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청소년회관 관리과 담당자 안경열 (전화063-450-65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련관이라 함은 취미교실, 강의실, 창작실, 음악감상실, 상담실, 청소년극장, 체육관, 예절관, 디스코텍, 숙소, 식당(매점)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수련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 게시, 영화촬영, 기타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 범위) 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체육대회, 감상회, 기타 수련활동 및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 예술활동 및 행사
2. 그 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 허가) ①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련관 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우선으로 하되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수련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청소년 극장, 체육관을 제외한 각 시설의 1일이라 함은 08:00~17:00까지로 한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영화 또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이하 할부제사용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30(이하 할부제 수입금액 이라 한다)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한다. 다만, 할부제 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사용료는 허가신청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④초과사용료 가산은 1시간미만 사용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1시간이상 2시간미만일 때에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하고, 2시간이상 초과사용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사용료(냉·난방 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도, 시의 행사는 전액 감면

2.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는 50퍼센트 감면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액 감면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신청자가 사용 5일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

제8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권의 판매 등) ①입장권의 판매 및 회수는 시장이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입장권(예매권, 초대권, 회원권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며 발행된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제한) 수련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시설위탁관리, 임대차계약)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련관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타인에게 위탁 및 임대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수련관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임대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명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시설물의 차임 납부방법
2.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계약의 담보와 보증 및 해제
4. 손해배상의 예약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시설을 임차하여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10일이내에 임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보증금은 수련관 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시가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내로 한다.

⑤공익 또는 공공단체가 임대차 할 때에는 전항의 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⑥위탁 또는 임대차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⑦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수탁 또는 임차기간중 시장이 필요하는 행사가 있을시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3조(시설보증금 예치) 시장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차임) 시설 임대에 따른 차임의 결정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시장은 공익성과 수입의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차임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사용료 부담) 사용료는 당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비용 부담) 임대차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시설 감사) ①시장은 시설운영 상황을 수시 또는 년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시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관리) ①수탁인 또는 임차인은 제반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며 유지보호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②임차인은 시설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현시설을 일부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보수 및 시설비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재산을 군산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설물 유지보호를 위하여 년중 시설물을 점검하고 파·훼손된 시설 또는 부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임대차 계약의 해지)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한 때
2. 임대차 조건에 위반한 때
3. 차임을 특별한 사유없이 체납한 때
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전대 또는 처분한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시설사고의 방지)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시설 운영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전책임을 진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제5조제1항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평 일			토 · 일 · 공휴일			
		행 사	영 화	공 연	행 사	영 화	공 연	
청소년극장	오전(08:00~12:00)	30,000	40,000	50,000	35,000	50,000	60,000	
	오후(13:00~17:00)	45,000	40,000	50,000	35,000	50,000	60,000	
	야간(18:00~22:00)	90,000	50,000	60,000	45,000	60,000	70,000	
체육관	체육경기	오전(08:00~12:00)	30,000			40,000		
		오후(13:00~17:00)	30,000			40,000		
		야간(18:00~22:00)	45,000			60,000		
	각종행사	오전(08:00~12:00)	90,000			120,000		
		오후(13:00~17:00)	90,000			120,000		
		야간(18:00~22:00)	135,000			180,000		
강의실	각 실당 1일	10,000			15,000			
취미교실	1일	10,000			15,000			
음악감상실	1일	10,000			15,000			
창작실	1일	10,000			15,000			
예절관	1일	10,000			15,000			
디스코텍	1일	10,000			15,000			
숙소	1인당(1박)	· 청소년:2,000			· 일반:3,000			

##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품 명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회	20,000	
영 사 기		1회	30,000	
조 명	체 육 관	1시간	30,000	
	청소년극장	1시간	15,000	
	기 타 시 설	1일	5,000	각 실당
음 향	마 이 크	1개	2,000	
	무선마이크	1개	5,000	
	녹 음 기	1회	3,000	
	녹 음 료	1회	4,000	

##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체 육 관	1회	100,000	1회는 4시간 이내로 한다.
청소년극장	1회	30,000	오전·오후·야간은 각1회로 본다.
기 타 시 설	1일(실당)	10,000	1일

## 4.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영화촬영	1회	3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TV 녹화료	1회	3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TV 중계료	1회	3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라디오 중계료	1회	2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아취 설치료	1건	10,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현관, 현수막설치	1건	5,000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 전화번호 :

2. 행사명 :

3. 사용기간 : 20 . . . ~ . . . ( 일간)

4. 사용시설 : ( 번) ①청소년극장 ②체육관 ③강의실 ④취미교실  
⑤음악감상실 ⑥창작실 ⑦예절관 ⑧디스코텍 ⑨숙소

5. 부속설비

품명	수량	품명	수량

※ 사용자가 특별히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 :

6. 관 램 료 : 원

7. 참가인원 : 명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단체명):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 명 :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2. 2 0 . . . 귀 청소년수련관( )을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 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변경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내역

가. 변경전 :  
나. 변경후 :

2 0 . . .

신청자 성명 : (인)  
(단 체 명)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청소년수련관 사용 허가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및 사유 :

4. 사용허가 기간 : 20 . . . ~ 20 . . . ( 일간)

5. 사용료

사 용 시 설	사 용 료	산 출 기 초	비 고

6. 허가조건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시설 임대차 계약서

군산시청소년수련관시설(매점포함)의 임대차 운영을 함에 있어 임대인 군산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탁인 시 (읍·면·동) 번지 ○○○를 “을”로 칭하여 다음 사항을 계약함

계약금액	원정
	₩

제1조 “을”은 “갑”의 책임하에 있는 군산시청소년수련관시설(매점포함)을 임차 경영함에 있어 청소년 수련관 시설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선량한 운영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 군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제16조에 의한 보증금은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당월 사용료는 익월 10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임차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장내 청결유지
2. 부당요금 징수 금지
3. 주류판매 금지

제4조 “을”은 “갑”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 업무의 지정 및 보고 시설개선 기타 이에 준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한다.

제5조 “을”은 임차 경영에 따른 과실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은 이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7조 “을”은 본 계약을 해약코자 할 때에는 해약 예정일부터 늦어도 1개월 전까지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의 약정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갑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하거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갑의 위신을 매우 손상시켰을 때
3.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5일이상 휴업한 때
4.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5. “갑”이 행정상 필요에 따라 해약하지 않으면 아니될 사정이 있을 때

제9조 ①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해약일로부터 10일안에 계약 당시의 대여물을 “갑”에게 돌려 주고 퇴거한다.

② “을”의 퇴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매 1일에 20,000원씩을 갑에게 배상한다.

제10조 ① “을”은 본 계약의 약정 및 군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③배상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배상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을”이 납부한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을”은 15일이내에 동보증금을 충당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제11조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개월로 한다.

제12조 “을”은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을” 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의 해석에 따른다.

②이 계약서는 “갑” 의 재산상의 피해 및 기타 손해배상에 있어 당해연도 재산세 납부세액이 30,000원 이상 재산 소유자인 “을” 의 연대 책임 보증인 2명의 연서로 2통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임차인(을) 주 소

성 명 (인)

을 의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을 의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 보증인 인감 증명 각1통

군산시 공고 제 2009-240호

## 공 고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함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내·외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일부 개정 및 신설

- (1) 대규모 투자기업의 정의에 관광산업을 포함 (안제2조15호)
- (2) “이전건당”용어 신설 (안제2조 18호)
- (3) 관광산업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안제2조19호~21호)

##### 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규정 보완 (안제16조3항 및 4항)

-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내에 신설, 이전,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국내기업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 다.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시 지원조건 강화 (안제18조1항·3항)

- (1)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상시고용인원이 30인”으로 변경 (안제18조제1항)
- (2)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을 “투자금액으로 20억원을 초과 하는”으로, “기업당”을 “이전건당”으로 변경 (안제18조 3항)

**라. 도내 기업의 관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 (안제18조의2)**

○ “시내에서”를 “도내에서”로 “2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변경

**마. 관광사업의 지원기준 마련 (안제20조부터 제23조)**

(1) 관광사업 시설투자비가 지원기준 신설 (안제20조)

- 투자금액으로 20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범위 안에서 최고 20억원 까지 지원

(2) 관광사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 신설 (안제21조 및 제22조)

- 국내기업의 적용기준에 준하여 지급

(3)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기준 신설 (안제23조)

- 투자금액 1,000억이상,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고용시 투자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100억원 까지 지원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군산시 시청로 8가(조촌동 888번지)  
군산시 투자지원과 (전화 : 063-450-4184, FAX : 063-450-6416)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시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투자지원과 담당자 강왕근(전화 : 063-450-41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중 “제조업 중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500인 이상”을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은 500인 이상, 관광사업인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2조 제18호부터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이전 건당”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에 의한 “이전건당”을 말한다
1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0.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2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 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

제16조의 제목 “(공장시설보조금 지원)”을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 하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내에서 첨단업종 및 관광사업에 신설·이전·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제1항중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을 “30인 이상” 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을 “투자금액으로 20억원”으로, “기업당”을 “기업당 (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으로 한다.

제18조의2중 “시내에서”를 “도내에서”로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기업당” 을 “기업당 (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2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20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0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시장은 제2조제21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제24조(보조금의 이중지급 금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14 (생략)		제2조(정의) 1 ~ 14 (생략)		
15.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u>제조업 중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00인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u>		15. -----투자금액이 <u>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상, 관광사업인 경우 20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u>		
<신 설>		18. “이전 건당”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18조에 의한 “이전 건당”을 말한다.		
<신 설>		1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 설>		20.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 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신 설>		21. “관광사업의 종류란”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 시설업, 제 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 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p> <p>①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06.05.10&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5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18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 군산시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상시고용 인원이 <b>20인</b> 이상 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③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내에서 첨단업종 및 관광사업에 신설·이전·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조례 제8조 제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 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p> <p>제18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 ----- <b>30인</b> ----- -----.</p> <p>1. ~ 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③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 (임대료포함) 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b>10억원을</b>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 안에서 <b>기업당</b> 최고 5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제18조의 2 (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 투자비 지원) <b>시내</b>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종이 시내 미분양 부지에 <b>상시고용인원 20인</b>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19조 ① (생 략)</p> <p>②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b>기업당</b> 최고 10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b>20억원을</b> ----- -----기업당 (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건당)----- ----- -----</p> <p>제18조의 2 (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 투자비 지원) <b>도내</b> ----- ----- ----- <b>상시고용인원 30인</b> ----- ----- -----</p> <p>제19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기업당 (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건당)----- ----- -----</p> <p>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 제2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인</p>

현 행	개 정 안
	<p>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lt;신 설&gt;</p>	<p>제2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20%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 18조의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22조(관광사업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시장은 20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 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23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시장은 제2조 21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p>
<p>&lt;신 설&gt;</p>	<p>제24조 (보조금 이중 지급금지) 제 20조 및 제 2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p>
<p>제20조 ~ 제33조 (내용생략)</p>	<p>제25조 ~ 제38조 (내용은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공고 제2009-241호

## 공 고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내·외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기준 마련 (안 제6조 및 7조)

나.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신청기준 (안제9조의3)

-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및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허가(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하여 4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 다. 보조금의 차등지원 적용기준을 신설 (안제10조의3)

- 투자시기, 고용실적 등을 감안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지원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군산시 시청로 8가(조촌동 888번지)  
군산시 투자지원과 (전화 : 063-450-4184, FAX : 063-450-6416)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시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투자지원과 담당자 강왕근(전화 : 063-450-41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조례 제14조, 제18조의3”을, “조례 제14조, 제18조의3 및 제21조”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별지 제8호 서식(국내기업)”을, “별지 제2호 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별지 제8호 서식(국내기업) 및 별지 제8호의2 서식(관광사업)”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조례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의4”를 “조례 제15조제2항, 제18조의4 및 제22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별지 제9호 서식(국내기업)”을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의2 서식(관광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조례 제 16조 제1항”을 “조례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청 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에서 군산시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간적용을 배제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허가(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부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하여 4년 이내에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규모투자기업지원)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보조금의 차등지원 적용기준 등) 조례 제18조, 제18조의 2, 제19조,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은 별포 2의 적용기준에 의하여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제12조제1항 중 “조례 제28조제2항”을 “조례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조례 제28조제3항”을 “조례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조례 제24조”을 “조례 제33조”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의2, 별표8의2, 별표9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의3에 의한 보조금의 차등지원은 공포일 이전 군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6조(고용보조금) 조례제14조 및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제2호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별지 제8호서식(국내기업)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고용보조금) 조례제14조, 제18조의 3 및 제21조의 규정----- ----- 별지제2호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별지제8호서식(국내기업) 및 별지 제8호의2 서식(관광사업)-----.</p>
<p>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조례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p>	<p>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제15조제2항, 제18조의4의 및 제22조----- -----.</p>
<p>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연도마다“별지제3호서식(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또는 “별지 제9호서식(국내기업)”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별지 제3호 서식(외국인투자기업), 별지제9호서식 (국내기업) 및 별지 제9호의2 서식(관광사업) -----.</p>
<p>제8조(시설 보조금 ) ① 조례 제16조 제1항의 ----- 있다 ② 생략</p>	<p>② 제8조(시설 보조금 ) ① 조례 제 16조 제3항의 ----- 있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 ④ (생략) ⑤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신고)일로부터 4년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이내에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에서 군산시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간적용을 배제한다.</p>	<p>제9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거 신청 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 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이내에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에서 군산시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간적용을 배제한다.</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제10조(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조례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제5조 내지 제 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 7호 내지, 제 9호 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의 3(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조례 제 20조 및 제 2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허가(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부터 등록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하여 4년이내에 별지 제 6호의 2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조례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 부터 제 7조까지 및 제 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 6호, 별지 제 7호, 별지 제 9호 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제12조(성과급지급)①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지급은 투자유치 규모 및 직접고용인원을 각각 차등 배분하여 별지 10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p> <p>② (생략)</p> <p>③조례 제28조제3항에 의한 추가성과급 지급 대상은 투자규모가 5억불이상이고,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p> <p>④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3(보조금의 차등지급)조례 제 18조, 제 18조의 2, 제19조, 제 20조,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여 지급한다.</p> <p>제12조(성과급지급)①조례 제34조제2항-----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조례 제34조제3항----- ----- -----.</p> <p>④조례 제34조 ----- ----- -----.</p>

현행	개정안
<p>신설</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 10조의 3에 의한 보조금의 차등지원은 공포일 이전 군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별표 2】**

**보조금 차등지원 적용기준**

**【적용기준】**

구 분	투 자 시 기	산정점수
투자시기별	입주계약 후 6개월이내 투자시	5
	입주계약 후 6개월이상 1년이내 투자시	4
	입주계약 후 1년이상 2년이내 투자시	3
	입주계약 후 2년이상 3년이내 투자시	2
고 용 인 원	상시고용인원의 80%이상 관내 고용시	3
	상시고용인원의 60%이상 80%미만 관내 고용시	2
	상시고용인원의 40%이상 60%미만 관내 고용시	1.5
	상시고용인원의 40%미만 시내 관내 고용시	1
지역업체이용	전체투자금액의 50%이상 관내업체 이용시	2
	전체투자금액의 40%이상 50%미만 관내업체 이용시	1.5
	전체투자금액의 30%이상 40%미만 관내업체 이용시	1
	전체투자금액의 30%미만 관내업체 이용시	0.5

※ 투자시기 : 적용시점은 건축허가(신고)일로 한다

※ 관내고용 : 입사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군산시내 거주자

※ 지역업체 이용 :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이용한 경우

**【지원비율 적용】**

구 분	합 산 점 수	지원비율
총점수 (부분별 산정점수 합산)	8점 이상 ~ 10점	5%
	6점 이상 ~ 8점 미만	4%
	6점 미만	3%

※ 지원비율 차등기준 적용을 위한 실적 등의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별지 제6호의2 서식]

##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시설투자비 보조금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보조금

지 원 대 상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사업계획 승인일		관광사업 등록일		공사 착공일	
----------	--	-------------	--	--------	--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시설규모	
------------------	--	------	--

상시고용 현 황	총 인원 : 명	시내 신규고용 인원 (명)	기존 고용인원 (명)
-------------	-------------	-------------------	----------------

### 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	투 자 금 액	비 고
합 계		
토 지 구 입 비		
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보조금 신청액	천원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



[별지 제9호의2 서식]

##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투자내용	신고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투자금액	천원	
회사설립일		등록일	
회사소재지			
상시고용 인원	명	시내신규훈련 인원	명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도내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1부
4.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